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(안)

의안 번호	24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6. 8
발 의 자 : 최광렬의원의 6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의2 (2006.4.28 신설. 2006.7.1일부터 시행)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의 개정으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개최의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등 해당의원에게 통지(안 제3조)
- 다. 윤리심사대상의원등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(안 제5조)
- 라. 윤리심사대상 의원 등은 필요한 증빙서류, 해명자료 등 제출(안제6조)
- 마.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0조의2,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훈령 제49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의 선임은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

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자격심사·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자격심사·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)
2. 자격심사·윤리심사피소의원 또는 징계대상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4조(출석요구) 위원장은 위원회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」(이하 "회의규칙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

제5조(발언 및 변명) 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 및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제6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(통고) 위원회가 회의규칙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.

제8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자격심사·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

제9조(비밀누설금지)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위임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